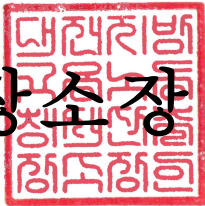
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 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01. 12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장



- 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2. 근 거 :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제 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 21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김O니	1988.03.18	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 종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IAP수립을 위한 의무 미이행 및 의무출석일 미방문, 연락두절	취업지원 종료(중단)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3년간 제한	폐문부재	충남 서산시 성연면 (이하생략)

- 4. 공고기간 : 2024. 1. 12. ~ 2024. 1. 26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가재정 (041-661-561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